

도로명 및 도로구간 결정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3일

파주시장

1. 고시일 : 2025년 10월 13일
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
3. 고시내용 :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(3개구간) 붙임참조
4.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주소정보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. 심의 결과 . 내용 및 절차		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	변경사항 및변경기준일
		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	동의 만료일부터 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	결과 통보

※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(☎031-940-4891~4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도로명 부여 고시조서 1부. 끝.